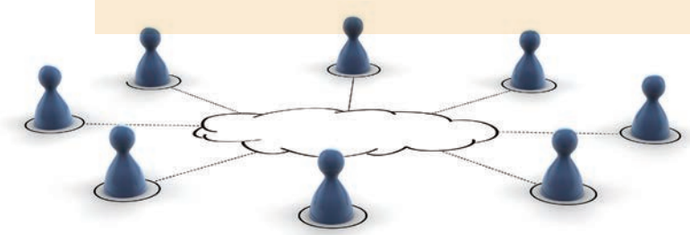
는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개모집 원칙을 배제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려면 다른 법령에 특정기관에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이 배제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3. 17. 의견 제시 14-00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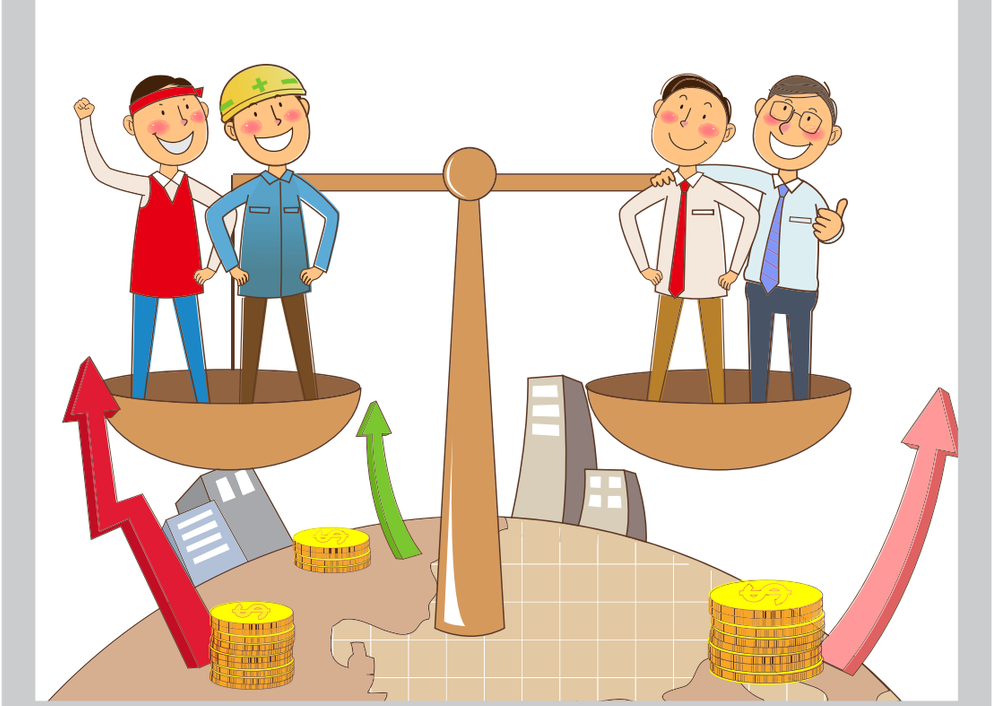
살피건대, 대구시관광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광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의무적으로 관광전담조직에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대구시관광조례 제9조제1항에서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관광전담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대구시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구시관광진흥조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원칙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시관광진흥조례 제9조의2제2항에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만으로는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가 생략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등을 위한 노동관계법 의원발의 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Ⅰ | 입안 배경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연간 2,246시간)에 이어 2위(연간 2,113시간)에 오르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간 근로시간은 과로사를 가져오기도 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현재 10여건이 발의되어 있는데, 노동시간 산정 단위인 1주에 휴일을 포함하는 내용, 근로시간 특례 대상 업종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보장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발의 법안 중에는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 도입을 반영한 법안도 다수 있다.

그 밖에 근로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Ⅱ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1. 휴일근로 기준 법제화

(1) 1주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 포함
1주간의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제외하던 휴일근로시간을 법률에서 직접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홍영표의원안, 한정애의원안, 김성태의원안 등)

(2) 관공서공휴일과 「근로기준법」 상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함(김성태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 한정애의원안 등).

2. 포괄임금산정제 제한

포괄임금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초과근로를 인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따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지급체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으로 한정함(이찬열의원안 등)

-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1)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함(김성태의원안, 홍영표의원안).
(2) 특례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도 60시간 한도까지만 초과 근로할 수 있도록 제한함(홍영표의원안).

4. 연소자 근로시간 제한

(1)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5시으로 제한함(한정애의원안)

(2)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현행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함(한정애의원안)

5. 그 밖의 근로여건 개선

(1) 사용자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신경민의원안).
(2) 사용자는 난임치료를 위하여 연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근로자의 난임휴가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김관영의원안).

Ⅲ |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1. 고용중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수급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도록 함(김성태의원안).

2. 구직급여 지급 요건 관련

(1)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김성태의원안, 김삼화의원안, 강병원의원안).
* 홍영표의원안과 이정미의원안은 연장기간을 360일까지로 함.
(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확대에 따라 기여요건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270일 이상으로 강화함(김성태의원안).

* 홍영표의원안은 180일을 120일로 완화함
* 이정미의원안은 기여요건을 18개월간 180일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변경함

(3)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도록 함(김성태의원안, 김삼화의원안).
(4)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홍영표의원안, 이정미의원안).
* 강병원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함

3.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관리 강화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김성태의원안).

4. 청년실업자 등을 위한 후납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구직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함(김삼화의원안).

* 강병원의원안 및 이정미의원안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 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까지 지급함.

5. 그 밖의 고용보험제 제도개선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함(이정미의원안).
(2)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김성태의원안).
(3)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김성태의원안).

Ⅳ | 「산업재해보상보장법」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김삼화의원안 등)

Ⅴ | 입법전망

주단위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일근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입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행정부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높은 근로시간과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도 국가재정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보이고 법리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공무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은 가능하나, 상당수의 출퇴근 사고가 자동차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교육환경평가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 건	교육환경평가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교회 유지재단(대표이사 ○○○) ○○○○○○도 ○○시 ○○7길 24 ○○교 ○○교구 대리인 청구인의 직원 ○○○ ○○○○○○도 ○○○시 ○○○○로 120(○○유치원) ○○교 ○○○ ○○
피 청 구 인	○○○○○○도교육감
심판청구일	2016. 9.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30. 청구인에게 한 ○○유치원 이전 신축사업 교육환경평가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